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125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일자 : 2022. 06. 13.

제안자 : 도시계획관리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일반 재건축·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공공주택 비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,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인 50%를 적용함.
-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에 한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'100분의 40'을 '100분의 50'으로 수정함(안 제50조제3항)
- 법적상한초과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'100분의 30'을 '100분의 50'으로 수정하고,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함(안 제50조제4항).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50조제3항 중 “100분의 4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하고, 안 제50조제4항 중 “100분의 30”을 “100분의 50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</p> <p style="margin-top: 50px;"><u><신설></u></p>	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법 제49조제7항에 따라</u> <u>"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</u> <u>율"은 100분의 40으로 한</u> <u>다.</u> ④ <u>법 제49조제9항에 따라</u> <u>"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비</u> <u>율"은 100분의 30으로 한</u> <u>다. <단서 신설></u></p>	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50</u>----- -. ④ ----- ----- -----<u>100분의 50</u>----- - <u>다만, 지역여건 등을</u> <u>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</u> <u>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</u> <u>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</u> <u>거쳐 100분의 40까지 완</u> <u>화할 수 있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의 제목 “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)”를 “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”로 한다.

제50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”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 적률 완화) ①~② (생 략) <신 설></p> <p><신 설></p>	<p>제50조(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 적률 등에 관한 특례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법 제49조제7항에 따라 "시 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 분의 50으로 한다. ④ 법 제49조제9항에 따라 "시 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 분의 50으로 한다. 다만, 지역여 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도 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 분의 40까지 완화할 수 있다.</p>